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43

발의연월일: 2025. 3. 4.

발 의 자 : 홍기원 · 김한규 · 정을호

조정식 · 차지호 · 박정현

허 영·조승래·최기상

이해식 · 김영환 · 한정애

윤호중 • 박상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따른 정부의 대북조치로 인하여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임.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협력업체 등은 경영 외적인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절한 보상을 받지못하고 있음.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 따라 지급 받은 보상 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8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5(남북경제협력 중단 조치에 따른 피해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받은 피해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의 신청, 피해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9조의15(남북경제협력 중단
	조치에 따른 피해보상금에 대
	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
	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
	법」 제4조에 따라 받은 피해
	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
	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
	금불산입의 신청, 피해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u>으로 정한다.</u>